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

I 운용기준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됨.
-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하더라도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됨.
-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영상 게시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이며, 후보자와 사전협의 등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있음.

【 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성격 】

⇒ 동영상의 일종으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에 영상을 합성하여 원본과 다른 이미지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제작 기법¹⁾으로,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은 법상 ‘동영상’*에 해당함.
 - *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 이용(\$59), 방송광고(\$70),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녹화기 송출(\$79), 인터넷광고(\$82-7) 등
 - ※ 현재 대선에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후보자의 영상·음성을 구현하고 사전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실제 후보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동영상임.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며,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인의 입장에서 실제 후보자의 행위로 오인되거나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등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동영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바, 사안의 딥페이크 영상도 동영상의 일종이므로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1) ‘20. 3. 9.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정책리포트

II 세부기준

1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활용

- 후보자 또는 제3자가 후보자의 영상·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활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해야 하는지

⇒ 표시하여야 함.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인이 실제 후보자의 행위로 오인하게 되어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됨.

-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후보자의 영상·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수 있는지

⇒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에 해당하여 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됨.

-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실제 후보자’ 보다 좋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동영상에 제작·활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딥페이크 이미지를 동영상에 제작·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 제250조 ‘허위의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을 말하며, ‘사실의 적시’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함(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2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법적 책임

□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 영상 게시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임.

□ 제3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경우 이에 대해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 후보자와 사전협의 등 형법상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있음.

※ 공모는 공모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제3자가 후보자의 영향력 범주내 있고, 후보자와의 사전협의, 양해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경우 이에 대해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 후보자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와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AI 기술이 발전하여 유권자와 '스스로 소통'하는 경우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AI 운영자가 키워드, 알고리즘 설계 등을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AI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3 딥페이크 영상 내용

- 후보자가 선거운동, 정당의 정책홍보, 명절 인사 등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활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됨.

- 제3자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활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됨.

4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전송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제3자가 딥페이크 영상이 탑재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녹화기에 상영할 수 있는지

⇒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됨.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법 제70조(방송광고)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자신의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법 제70조에 따라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녹화기에 자신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법 제79조 제10항에 따라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송출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따라 방송연설시 후보자 대신 딥페이크 영상을 방영할 수 있는지

⇒ 법 제71조에 위반됨.

방송연설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이므로 후보자 대신 딥페이크 영상을 방영하는 것은 법 제71조의 취지에 벗어남.

※ 법 제71조와 유사한 선거운동 방법인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도 후보자 대신 딥페이크 영상을 방영할 수 없음.

□ 향후 AI 기술이 발전하여 유권자와 '스스로 소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법상 제한하기 어려움.

법 제58조(정의 등)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제한·금지되는 경우 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논의가 필요함.

공직선거법

[시행 2021. 9. 27.]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 5. (생략)

제70조(방송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② ~ ⑧ (생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 ⑨ (생략)

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 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생략)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